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90호 2024. 12. 20.(금)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8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3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5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6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3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6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3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3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77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86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106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 ————— 119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9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폐지규정  
————— 120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2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을 “(국·단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및 실·단·과장”을 “국·단장 및 실·과장”으로,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국의 설치)”를 “(실·국·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복지국”을 “분구추진단, 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행정문화국에 한시기구로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을 “한시기구로 분구추진단을 두고, 분구추진단에 분구추진과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을 “민원봉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7호부터 제19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구추진단) ① 분구추진단에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분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재정·인프라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3.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4. 정보시스템 운영
5.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6.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7. 소통1번가총괄
8. 민원분석 툴 운영
9.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 등
10. 대표 홈페이지 운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른 분구추진단과 분구추진과의 존속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80명”을 “1,4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49명”을 “1,451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직속기관	출장소	동
			기 구			
총 계	1,48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77	-				
2급	1	1				
4급	10	8	1	1		
5급	73	39	2	8	1	23
6급 이하 계	1,39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				
6급 상당 이하 계	2	-				

## 【별표 4】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제5조 관련)

관리기관	부서	구분		한시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계				17	
본청	분구추진과	일반직	4급	1	2026년 6월 30일까지
			5급	1	
			6급 이하	15	

\* 분구추진과 총정원

구분	총정원	한시정원	자체정원
인원(명)	23	17	6
비고	4급(1), 5급(1), 6급 이하(21)	4급(1), 5급(1), 6급 이하(15)	6급 이하(6)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2024. 12. 20.(금)  
인cheon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4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서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6조(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1890호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4. 12. 20.(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지원서

##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소속			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현주소	주택				
	사무실				
연락처	사무실	팩스번호	휴대전화	E-mail	

## 2. 경 력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업무

##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유 무 (해당 공란에 ✓ 기입)

유경험자 참여내용	
--------------	--

##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희망 동(2지망까지 기재)	신청이유
1.	
2.	

※ 희망하는 동 이외의 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마을세무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전체”를 “주민 전체”로,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정부나”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행정목적달성”을 “행정 목적 달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율”을 “행동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별하고”를 “분별하고,”로, “존중하며”를 “존중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임자로”를 “수임자로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공무외”를 “공무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목의 “공 직 자 의 행 동 율”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들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 이라 한다)”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국가·시지정문화재”를 “국가·시지정문화유산”으로, “것과”를 “유형·무형기념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유산 지정)”을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은”을 “향토문화유산은”으로,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유산의 종류)”를 “(향토문화유산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을 “향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을 “향토문화유산을”로, “문화유산 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문화유산 주변”을 “향토문화유산 주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유산의”를 “향토문화유산의”로, “문화유산 보존”을 “향토문화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를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을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및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	---------------	---------

⑧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보행관련 시각매체의 세부 항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8호

##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여 한글 진흥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깨달아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 3. 꼭 사용해야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표시)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 문자를 쓰는 경우 한글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쓴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지명 및 건축물의 명칭) ① 구청장은 서구내 신설 도로 지명 제정시 지역의 고유어, 한글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제정시 다수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명칭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명칭이 외래어일 경우 아름다운 한글 명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

## 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람을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1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구청장은 서구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9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

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  
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  
· 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  
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  
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  
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  
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  
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 2. 신청내용

이의신청 대상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3. 서명 및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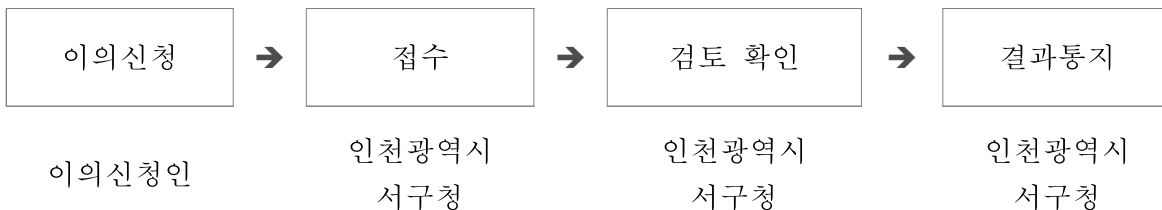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귀하

### 처리절차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0호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5.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2. 관할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국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sup>제1890호</sup>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sup>인천광역시서구구보</sup>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 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 지역협의회는 안전 검토 및 사업지원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역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1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 ② 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7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

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 4.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

제1890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4. 12. 20.(금)  
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인천광역시 서구구보 2024. 12. 20.(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자는 제4조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	비 고
분 뇨		10리터당	720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 가	100리터당	2,080원	
	지하층 할증료		8%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 4. 상해보험 가입비
-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34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구보 2024. 12. 20.(금)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

천광역시 서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  
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2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

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30호

##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 및 재활용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31호

##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순찰단”이란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4.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  
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순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된 임명된 의용소  
방대원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위촉된 자율방재단원
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  
촉 할 수 있다.

제4조(역할) 안전순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2.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3.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기취급 주의사항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순찰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순찰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순찰단을 해  
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2.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  
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순찰단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결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구보 2024. 12. 20.(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3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

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33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234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89호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2024. 20.(금)

제5조의3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단·과의 사무분장)”을 “(실·과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분구추진단장



**한시정원의 직급 및 직렬 (제5조 관련)**

관리기관	부서	직종	직급	한시 정원	직렬
계				17	
분청	분구추진과	일반직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6	행정 2, 세무 1, 전산 1, 시설 1, 행정시설 1
			8급	5	행정 4, 행정·방송통신 1

##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482	928	31	112	43	368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477	923	31	112	43	368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10	8	1	1			
서 기 관	5	4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73	39	2	8	1	23	
행 정	13	11	2				
의 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1	1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공업 · 농업	2					2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6급 소계	332	231	10	23	10	58	
행	정	96	79	5	1	1	10	
세	무	15	13			2		
전	산	2	2					
사	회	19	19					
속	기	2		2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6	6					
수	의	1	1					
보	건	5	5					
의	료	1			1			
간	호	1			1			
환	경	6	6					
시	설	28	26			2		
방	송	1	1					
운	전	6	2	1		1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2	
	행 정 · 세 무	22	12			1	9	
	행 정 · 사 회 복 지	44	10				34	
	행 정 · 공 업	4	4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보 건	3	2			1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환 경	4	4					
	행 정 · 시 설	18	18					
	행 정 · 방 송 통 신	3	3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환 경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2			2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9			9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 보 건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약 무 · 간 호	1			1			
	<b>7급 소계</b>	<b>469</b>	<b>289</b>	<b>17</b>	<b>49</b>	<b>14</b>	<b>100</b>	<b>(1)</b>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	정	174	100	16		3	55	(1)
세	무	21	19			2		
전	산	4	4					
사	회 복 지	82	44				38	
공	업	12	11			1		
농	업	1				1		
녹	지	9	9					
수	의	1	1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5	11		3	1		
의	료 기 술	4			4			
간	호	31	3		28			
환	경	16	16					
시	설	51	46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4	4					
운	전	8		1	2		5	
기	계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8	8					
행	정 · 수 의	2	2					
농	업 · 수 의	1	1					
보	건 · 간 호	6			6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2			2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4			4			
8급 소계		410	245	1	29	12	123	(5)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	정	140	80	1			59	(5)
세	무	17	15			2		
전	산	4	4					
사	회 복 지	66	22		1		43	
공	업	13	13					
농	업	1	1					
녹	지	8	8					
보	건	8	4		1	3		
의	료 기 술	2			2			
간	호	20			11		9	
환	경	21	21					
시	설	50	44			6		
방	재 안 전	2	2					
방	송 통 신	4	4					
운	전	12			1		11	
기	계 운 영	1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7	6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2	1			1		
행	정 · 보 건	2	2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시 설	4	4					
행	정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5			5			
보	건 · 환 경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4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82	110		2	6	64	(3)
행	정	90	46			3	41	(3)
세	무	6	5			1		
사	회 복 지	26	5				21	
공	업	5	4			1		
농	업	1	1					
녹	지	7	7					
보	건	2	1		1			
의	료 기 술	1			1			
환	경	1	1					
시	설	24	23			1		
방	송 통 신	1	1					
운	전	1					1	
행	정 · 세 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3	3					
행	정 · 방 재 안 전	1					1	
녹	지 · 시 설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3	3					
	5급 상당 소계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9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실·단·과별”을 “실·과별”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482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1,477	
		2급	1	행정 1
		4급	10	행정 5, 기술 2, 행정·기술 3
		5급	73	행정 13, 의무 4,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332	행정 96, 세무 15, 전산 2, 사회복지 19,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1, 간호 1, 환경 6, 시설 28, 방송통신 1,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22, 행정·사회복지 44, 행정·공업 4,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3, 행정·간호 1,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8, 행정·방송통신 3, 사회복지·간호 1,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의료기술 2,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1,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69	행정 174, 세무 21, 전산 4, 사회복지 82, 공업 12, 농업 1, 녹지 9,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5, 의료기술 4, 간호 31, 환경 16, 시설 5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4, 운전 8, 기계운영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농업 1, 행정·수의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8, 농업·수의 1, 보건·간호 6, 보건·환경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8급	410	행정 140, 세무 17, 전산 4, 사회복지 66, 공업 13, 농업 1, 녹지 8, 보건 8, 의료기술 2, 간호 20, 환경 21, 시설 50, 방재안전 2, 방송통신 4, 운전 12, 기계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1, 행정·농업 2, 행정·보건 2, 행정·간호 1, 행정·시설 4, 행정·방재안전 1, 행정·방송통신 1, 사회복지·시설 1, 공업·보건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5, 보건·환경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 별 내역
		9급	182	행정 90, 세무 6, 사회복지 26, 공업 5, 농업 1, 녹지 7, 보건 2, 의료기술 1, 환경 1, 시설 24, 방송통신 1,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5,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3, 행정·방재안전 1, 녹지·시설 1
	별정직	계	3	
		5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0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별내역
구 분 청	계		928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923	
		2급	1	행정 1
		4급	8	행정 4, 기술 1, 행정·기술 3
		5급	39	행정 11,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6급	231	행정 79, 세무 13, 전산 2, 사회복지 19,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6, 방송통신 1,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행정·세무 12, 행정·사회복지 10, 행정·공업 4, 행정·녹지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8, 행정·방송통신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환경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7급	289	행정 100, 세무 19, 전산 4, 사회복지 44, 공업 11, 녹지 9,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1, 간호 3, 환경 16, 시설 46, 방재안전 1, 방송통신 4, 기계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수의 2, 행정·농업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8, 농업·수의 1, 보건·환경 1
		8급	245	행정 80, 세무 15, 전산 4, 사회복지 22, 공업 13, 농업 1, 녹지 8, 보건 4, 환경 21, 시설 44, 방재안전 2, 방송통신 4, 기계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2, 행정·시설 4, 행정·방재안전 1, 행정·방송통신 1, 사회복지·시설 1, 공업·보건 1, 보건·환경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9급	110	행정 46, 세무 5, 사회복지 5, 공업 4, 농업 1, 녹지 7, 보건 1, 환경 1, 시설 23, 방송통신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5,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3, 녹지·시설 1	
	별정직	소계	3	
		5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0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3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10	행정 5, 속기 2, 운전 1,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 1,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7급	17	행정 16, 운전 1
		8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별내역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112	
		4급	1	기술 1
		5급	8	의무 4,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23	행정 1, 의료기술 1,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의료기술 2,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9	보건 3, 의료기술 4, 간호 28, 운전 2, 보건·간호 6,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8급	29	사회복지 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11,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5,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2	보건 1, 의료기술 1
출 장 소	일반직	계	43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0	행정 1, 세무 2, 시설 2, 운전 1,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4	행정 3, 세무 2, 공업 1, 농업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12	세무 2, 보건 3, 시설 6, 행정·농업 1
		9급	6	행정 3, 세무 1, 공업 1, 시설 1
동	일반직	계	368	
		5급	23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6급	58	행정 10, 운전 2, 사무운영 2,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34, 행정·간호 1
		7급	100	행정 55(행정복지 1), 사회복지 38, 운전 5, 행정·사회복지 2
		8급	123	행정 59(행정복지 5), 사회복지 43, 간호 9, 운전 11, 행정·사회복지 1
		9급	64	행정 41(행정복지 3), 사회복지 21, 운전 1, 행정·방재안전 1

## [별표 2]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928	
감 사 실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5	행정 3,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9	행정 5, 사회복지 1, 시설 3
정 책 기 획 과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4, 시설 1, 행정·시설 1
		7급	9	행정 7, 시설 2
		8급	2	행정 2
예 산 범 무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4, 세무 1
		7급	8	행정 8
		8급	2	행정 2
		9급	1	행정 1
홍 보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1
		6급	3	행정 3
		7급	4	행정 3, 전산 1
		8급	2	행정 1, 행정·전산 1
		9급	2	행정 2
세 무 1 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4, 행정·세무 6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5	행정 1, 세무 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4	세무 2, 행정·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36	
		5급	1	행정 1
		6급	11	세무 7,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10	세무 10
		9급	4	세무 3, 행정·세무 1
총 무 과		계	36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32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9	행정 8, 운전 1
		7급	9	행정 8, 행정·시설 1
		8급	10	행정 10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3
	5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5, 행정·시설 1
		7급	6	행정 4, 행정·시설 2
		8급	10	행정 8, 시설 2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4, 시설 1, 운전 1
		7급	8	행정 4, 공업 1, 시설 2,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5, 공업 1
		9급	2	행정 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민원봉사과		계	24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5, 전화상담운영 1
		7급	4	행정 4
		8급	7	행정 7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분구추진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6
		7급	10	행정 6, 세무 1, 전산 1, 시설 1, 행정·시설 1
		8급	5	행정 4, 행정·방송통신 1
정보통신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방송통신 1
		6급	6	행정 1, 전산 2, 방송통신 1, 행정·방송통신 2
		7급	5	행정 1, 전산 2, 방송통신 2
		8급	7	전산 4, 방송통신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9급	1	방송통신 1
복지정책과	일반직	소계	31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2
		7급	13	행정 3,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8	사회복지 7,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생활보장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2
		7급	10	행정 1, 사회복지 7, 간호 2
		8급	5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9급	5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노인장애인 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행정 1,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7급	10	행정 1, 사회복지 8, 행정·사회복지 1
		8급	7	사회복지 6, 사회복지·시설 1
		9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교육지원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8	행정 6,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4
		9급	4	행정 4
가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33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9	행정 2, 사회복지 5, 행정·사회복지 2
		7급	10	행정 3, 사회복지 7
		8급	10	행정 3, 사회복지 4, 시설 1, 행정·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동행복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7급	12	행정 2, 사회복지 9, 보건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행정 <sup>94</sup>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환경 관리 과	일반직	소계	28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4, 행정·환경 1
		7급	10	공업 1, 환경 9
		8급	9	행정 1, 환경 8
		9급	2	환경 1, 행정·환경 1
기 후 대 기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환경 1
		6급	4	공업 1, 환경 1,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5	행정 1, 공업 1, 환경 3
		8급	9	공업 1, 환경 7, 행정·공업 1
		9급	3	공업 2, 행정·환경 1
생 태 하 천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8	행정 1, 공업 2, 시설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보건·환경 1
		7급	7	행정 1, 공업 1, 환경 1, 시설 4
		8급	4	보건 1, 시설 3
		9급	5	행정 1, 시설 3, 녹지·시설 1
자 원 순 환 과	일반직	소계	35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8	행정 3, 환경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공업·보건 1, 행정·보건·환경 1
		7급	11	행정 4, 보건 1, 환경 3,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보건·환경 1
		8급	11	행정 1, 환경 6, 보건·환경 2, 행정·보건 2
		9급	4	행정 4
공 원 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5	녹지 4, 행정·녹지 1
		7급	5	녹지 5,
		8급	4	행정 1, 녹지 3
		9급	4	녹지 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산 립 정 원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녹지 1
		6급	3	녹지 2, 행정 · 녹지 1
		7급	4	녹지 4
		8급	5	녹지 5
		9급	4	녹지 3, 행정 · 녹지 1
경 제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 · 기술 1
		5급	1	행정 · 농업 · 수의 1
		6급	6	행정 4,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5, 수의 1, 해양수산 1, 행정 · 농업 1, 행정 · 수의 2, 농업 · 수의 1
		8급	5	행정 1, 농업 1, 시설 2, 행정 · 농업 1
		9급	1	농업 1
정 년 정 책 일 자 리 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5	행정 5
		8급	5	행정 5
		9급	3	행정 3
기 업 지 원 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 공업 1
		6급	6	공업 3, 행정 · 공업 2,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6	행정 1, 공업 3, 시설 1, 기계운영 1
		8급	4	공업 4
	9급	3	행정 2, 공업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식 품 위 생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보건 1
		6급	7	보건 5,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4	보건 3, 공업·보건 1
		9급	2	보건 1, 행정·보건 1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시설 5, 행정·시설 1
		7급	11	행정 1, 시설 9,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2, 시설 3, 행정·시설 2
		9급	1	시설 1
도 로 과	일반직	소계	27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공업 2,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5	행정 2, 공업 1, 시설 2
		8급	12	행정 2, 공업 1, 시설 7, 기계운영 1,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도시계획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1, 시설 1, 행정·시설 3
		7급	8	행정 2, 시설 6
		8급	6	행정 2, 시설 4
		9급	3	시설 3
건축과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1, 시설 4
		7급	5	시설 5
		8급	12	행정 1, 공업 3, 시설 8
		9급	8	시설 7, 행정·시설 1
주택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5	시설 5
		8급	4	시설 4
		9급	4	행정 1, 시설 3
주택관리과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 1
		6급	3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4	시설 3, 행정·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1, 행정·시설 1
도시재생경관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1, 시설 2, 행정·시설 2
		7급	6	행정 1, 시설 4,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2, 시설 4
		9급	6	행정 2, 시설 4
안전총괄과	일반직	소계	29	
		4급	1	행정·기술 1 <sup>98</sup>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행정·시설 4,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7급	5	행정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간호7급 1
		8급	12	공업 1, 시설 2,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행정·방재안전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9급	2	행정·시설 1, 행정 1
교통정책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3	행정 2, 시설 1
주차관리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3, 세무 1, 시설 2
		7급	4	행정 2, 공업 1, 시설 1
		8급	3	행정 3
		9급	2	행정 2
차량민원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1, 행정·세무 2, 행정·공업 1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9	행정 7, 세무 1, 공업 1
		9급	5	행정 4, 공업 1

## [별표 4]

##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112</b>	
보건 행정 과	일반직	계	25	
		4급	1	기술(개방형) 1
		5급	3	의무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5	보건·의료기술 1,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11	보건 1, 간호 7, 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5	보건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간호 2, 보건·간호 1
질병 관리 과	일반직	계	27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6급	3	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13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4, 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운전 2
		8급	9	간호 1,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2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건강 증진 과	일반직	계	29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10	행정 1, 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7급	12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7,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8급	5	의료기술 1, 간호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치매정신과	일반직	계	31	
		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5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13	간호 10, 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10	사회복지 1, 의료기술 1, 간호 6, 보건·간호 2
		9급	2	보건 1, 의료기술 1

## [별표 6]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68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9	행정 5, 사회복지 2, 간호 1, 운전 1
		9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연 회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3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2, 간호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방재안전 1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7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2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9	행정 5, 사회복지 3,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6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3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 사회복지 3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간호 1
		9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사무운영 1,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행정 ·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신현원창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간호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간호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2	행정 2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7	행정 2, 사회복지 3, 간호 1, 운전 1
		9급	1	사회복지 1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운전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4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사무운영 1
		7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8급	6	행정 2, 사회복지 3, 간호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6급	3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간호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보건·시설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오류왕길동	일반직	소계	15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2	행정 2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2
아 라 동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간호 1
		7급	6	행정 4, 사회복지 2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1, 운전 1, 간호 1
		9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2. “상황관리”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  
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  
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 제2장 구성 및 임무

- 제3조(구성) ① 상황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  
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  
서의 장이 된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상황  
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간부 및 인천광역시 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보고 및 전  
파
-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 상황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간근무: 09:00부터 18:00까지
  - 2. 야간근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2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 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7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 2. 수시보고서: 필요 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 보고
-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상황실장은 인천광역시 상황실 및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제10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주요 재난 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해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장 보안관리

제12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5조(결원보충) 구청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요건을 고려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

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제6조제4항 관련)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근무형태: 3조 3교대

구분		근무시간	상황실장	운영인력(명)	근무장소
평일	주간	09:00~18:00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사회재난담당)	전담인력 3명 (24시간 3교대)	재난안전상황실
	야간	18:00~09:00	당직사령		
공휴일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2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상황실 근무자는 2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실 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실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 일일상황 보고서(08시 기준) 작성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구청장, 부구청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 00년 00월 00일(0요일) 08:00

서구 재난안전상황실 (032-560-0000)

### 1 기상상황

단기 기상전망

구분	일자	기상내용	기온(°C)	특이사항
오늘	00. 00.(0)			
내일	00. 00.(0)			

중기 기상전망

구분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오전								
오후								
기온(저/고,°C)								

### 2 재난(안전) 관리 현황

재난안전사고 발생건수(금일/누계)

구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난	지진	기타
0건	-	-	-	-	-	-	-

메시지 처리(훈련포함)

구분	계(건)	NDMS				FAX				기타		
		중재대	양본	행안전부	인광역시	행안전부	인광역시	소본	방부		해경	양찰
계												
접수												
발송												

※ 접수·발송:

주요 재난안전 사고 현황

유형	발생 개요	피해 사항	비고

 현장사진(필요 시)


### 3 재난안전 관련 주요 언론보도 현황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난상황 보고서

수신(보내는 기관명):

시행일시(보고서 제출 일시): 2024.00.00. : \_\_\_\_\_

접수일시: 2024.00.00. : \_\_\_\_\_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 0000. 00. 00. 00:00(재난 발생일시)
2. 장소 : 인천 서구 ○○로 ○○번길 ○○공장 (구체적인 장소)
3. 상황 개요  
(예시) 금일 9:50경 ○○동 ○○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4. 피해상황
  -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 나. 재산피해:
  -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 가. 조치사항
    - 
    - 
    - 재난문자 발송 : 0000. 00. 00. 00:00
  -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음.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일자	구분	상황근무자	팀장	과장	결 재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근무일시	년 월 일( )요일 : ~ 월 일 :				
상황실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상황전담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상황반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상황반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

구분 시· 유관기관별	점검(보고)사항					
	1차(18:00)			2차(08:00)		
	시간	수화자	이상 유무	시간	수화자	이상 유무
인천도시가스 (전화: 570-7942)						
서부소방서 (전화: 주,야 723-5476) (화재조사반: 723-5456)						
검단소방서 (전화: 주,야 590-2794) (화재조사반: 590-2798)						
서부경찰서 (전화: 453-3329)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9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202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98호

###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